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따라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5급4, 6급3, 7급3, 8급10, 9급1)을 증원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신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6급2, 7급2)을 증원하며,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30. ~ 7.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5조제10항 중 “2023년 8월 9일”을 “2025년 8월 9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917”을 “2,942”로 하고, 일반직 계 “2,806”을 “2,83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83”을 “2,808”로 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별표 5 제7호 중 “2023년 8월 9일”을 “2025년 8월 9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u>10퍼센트</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물과학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u>10퍼센트</u> -----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5조(한시정원) ① ~ ⑨ (생략) ⑩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3년 8월 9일까지</u>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⑪·⑫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한시정원)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 --- <u>2025년 8월 9일</u>----- ----- -----. ⑪·⑫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917</u>		<u>2,942</u>	+25	
	.		.		.		
	.		.		.		
일반직	계		<u>2,806</u>		<u>2,831</u>	+2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783</u>		<u>2,808</u>	+25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7